

[서식 예]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○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금○○○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처분의 경위

△△시장은 19○○. ○. ○. 복개, 확장, 포장하는 길이465.6m 폭 30m ◎◎천 복개공사를 공사금액 1,452,403,690원으로 시공하여 19○○. ○. 이. 위 공사를 준공하고서 같은 해 ○. ○. 피고에게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을 통보하였고, △△시장으로부터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도로법 및 △△광역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그 소정의 산출방식에따라 원고 소유의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지 345㎡(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)를 비롯한 위 도로에 접한 토지들에 대한 공사 전후의 가액을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감정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공사전인 공사시행공고 당시 ㎡당



가액이 130,000원이고 공사후인 공사준공일 현재 가액이 150,000원으로서 그동 안의 m²당 상승가액은 20,000원인데 비해 그동안의 도매물가상승치에 상응한 m²당 상승가액은 700원에 불과하여 위 시가상승액이 위 도매불가상승치의 2배를 넘어 원고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 19,300원의 1/2인 9,650원에서 이 사건 토지가 확장도로변의 4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5할을 감액하여 이 사건 토지의 평수에 따라 산출한 1,664,625원 [(20,000원-700원)×1/2] ×1/2] ×345m²의 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습니다.

2. 처분의 위법성

- 가.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확장도로변에 접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4M 높이 이상의 옹벽위에 들어 얹히게 되었고 그 때문에 도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좌우로 원거리를 우회하게끔 되었으며 또한 그 통행로도 옹벽공사로 인하여 협소하게 되어 공사전보다 통행이 더 불편하게 되었습니다.
- 나. 그럼에도 피고는 공사후의 이 사건 토지의 지가는 공사전의 지가와 거의 같 거나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극히 소폭에 불과한데도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다른 접도토지들의 지가가 위 공사로 인하여 대폭 상승한 결과 표본조사에 의한 평균 상승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은 위법하다 할 것 이며, 나아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위 공사로 인하여 특수한 곳에 위치하게 되어 그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거나 소폭으로 상승한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표본조사방법에 의하여 상승폭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필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그 부담금을 결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〇〇. 〇. 〇.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

1. 갑 제1호증 주민등록등본

1.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1. 갑 제3호증 토지대장

1. 갑 제4호증 지적도

1. 갑 제5호증의 1내지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

1. 갑 제6호증 도로수익자 부담금 및 공사정산내역통보

1. 갑 제7호증 현장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납 부 서 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○ ○ 행 정 법 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